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- 14호

「**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0월 6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(제1조, 제2조)

나.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・시행 (제5조)

다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(제6조)

라.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(제7조)

마.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제8조, 제9조)

바.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・홍보에 관한 사항(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10월 11일**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　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.
2. "종합복지서비스"란 국가, 서울특별시, 강서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·재활·교육·직업훈련·고용·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"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(이하 "복지단체"라 한다)"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 이라 한다)을 4년마다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·조사·시행에 관한 사항
3.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5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「장애인복지법」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,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복지시설의 확충 등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,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

지단체·교육기관·복지시설·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홍보)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, 유선방송,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